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시 정 요 구

제 목 다중이용업소 등 안전관리 부적정

기 관 명 광주광역시

내 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여야 하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의하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실내장식물(반자돌림대 등의 너비가 10센티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은 불연재료(不燃材料)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 따르면 다중이용업주는 해당 영업장에 설치된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을 「소방

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감사기간 중 광주광역시 소재 다중이용업소 50개소, 다중이용시설 7개소를 확인한 결과 다중이용업소 19개소 29건, 다중이용시설 1개소 1건에서 안전시설 등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가 부 적정하였다.

조치할 사항 광주광역시장은

[시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한 2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50만원을 각각 부과하고, 기타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안전시설 등을 부적정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한 19개소에 대해서는 조치명령을 하고,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